

제 1033 호

1984.8.6

부정인 : 서울특별시장 열조
문 담 : 관광국
전화 : 725-7661-9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2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1903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증개정조례 3

◎ 규칙

제 2071 호 : 서울특별시 가로수관리규칙개정규칙 3

제 2072 호 :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증개정규칙 11

제 2073 호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관리사업조정위원회규칙증개정규칙 11

제 2074 호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칙증개정규칙 13

제 2075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증개정규칙... 22

< 이 면 계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059

◎ 고 시	
제 480 호 : 주택 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 문제의 일부변경인가고시	23
제 481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추가)	23
제 482 호 : 도심지재개발사업제획변경결정고시	24
제 483 호 : 주택 개량재개발사업제획변경결정고시	26
제 48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27
제 485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고시	27
제 486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지적승인	28
제 487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설계변경허가	28
◎ 공 고	
제 483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공람공고	29
제 484 호 : 판인재교부폐기공고	29
제 485 호 : 198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공고	30
제 486 호 :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취소	31
제 488 호 : 공산품품질검사불합격상품공고	32
제 489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32
제 490 호 : 풍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및 판계도면공람	32
제 491 호 : 풍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및 판계도면공람	35
제 494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세풍을수점류장)	36
제 495 호 : 전설업(전문공사업) 면허취소	37
제 496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37
제 498 호 : 구로지구환지계획 일부변경 및 환지예정지지정공고	40
◎ 구청공고	
강서구공고제 52 호 : 직인개각공고	40
◎ 사 령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4.8.18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03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110원"을 "140원"으로 "8원 62전"을 "1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규칙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 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8.18

서울특별시장 영보현 인

◎ 서울특별시규칙 제 2071 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관리 규칙 개정 규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내 가로수를 계획성있게 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국토녹화, 경관 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등을 위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등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는 나무를 말한다.

2. "가로수 관리책임자"라 함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구청장을 말하여 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3. "단열심기"라 함은 차도 측 보도변에 1열로 심는 것을 말하고 "병열심기"란 같은 보도상에 2열로 심는 것을 말하며 1열은 차도 측에 1열은 전용 측에 심는다.

4. "경선"이라 하면 나무모양이 불량한 기존 가로수를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식수대"라 하면 가로수를 보도정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물주기, 거름주기 등 사

<p>후관리에 편리하도록 가로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이하 식수대라 한다.</p> <p>6. “가로수 치지대”라 하면 가로수를 기상의 피해 및 인위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심는 가로수의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이며 이하 치지대라 한다.</p> <p>7. “가로수보호관”이라 함은 식수대내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이며 이하 보호관이라 한다.</p> <p>8. “가로수보호대”라 함은 가로수를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이며 이하 보호대라 한다.</p> <p>9. “가로수급수관”이라 하면 가뭄시 물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이며 이하 급수관이라 한다.</p> <p>제 3 조 (나무종류 선정기준) 가로수의 종류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2. 서울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3.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질은 나무 4. 인위적 피해에 강한 낙엽 활엽수 <p>제 4 조 (나무종류) ① 가로수로 심는 나무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심지 - 벼름나무, 은행나무, 가 	<p>중나무</p> <p>2. 교외지 - 벼름나무, 가중나무, 은단풍, 느티나무, 회화나무, 백합나무, 이태리포플러, 철엽수</p> <p>3. 강변로 - 벼름나무, 회화나무, 수양버들</p> <p>② 제 1항 이외에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나무</p> <p>제 5 조 (나무모양의 표준) 가로수로 심는 나무의 모양은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무높이 3.5미터, 가슴높이지름 6센치 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심가 및 특정지역에는 나무높이 4미터, 가슴높이지름 10센치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나무별 특유의 모양을 갖추고 나무줄기는 꼼아야 한다. 3. 가지가 균형이 잡히고, 생육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나구껍질에 손상이 없고,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5. 활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분의 크기는 밀동지름의 4배이상으로 한다. <p>제 6 조 (나무심기의 기준) 가로수의 심기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노폭 20미터
---	---

이상의 도로로 써 보도의 폭이 2 미터 이상의 도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여건 및 도시경관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심을 수 있다.

2.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열심기도 할 수 있다.

3. 병열심기는 보도폭이 6미터 이상 넓은 지역으로 도로의 바깥 측이 건물에 접하지 않은 곳과 건물이 인도의 바깥쪽 경계에서 충분히 떨어져 건축된 곳에 한하여 심는다. (학교, 기관의 담장 밑 또는 용벽, 석축, 절개지)

4. 같은 노선에 같은 나무종류를 심는다.

5. 심는 거리는 7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는 6미터 거리로 심는다.

6. 심는 위치는 보차도 경계에서 40-50센치미터 떨어진 보도에 심는다.

7. 자연경관 및 도로보호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지역에는 심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심기가 부적합한 도로나 커브길 또는 교차로로 써 차

량의 시계를 가리는 구간
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리는 구간

라. 교통신호등, 각종 안내판의 시계를 가리는 장소

제 7조 (경신) ① 나무모양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불량한 가로수는 적기 세 바꾸어 심어야 한다.

1. 말라죽은 가로수
2. 나무껍질에 많은 해를 입은 가로수

3. 나무줄기가 부러져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죽거나 빠진 꽃이 없는 가로수

5. 고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6. 미관을 해치는 나무모양이 불량한 가로수

7. 나무줄기가 썩어 넘어갈 경우 사람 및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8. 교통사고, 충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 가로수

② 바꾸어 진 가로수는 관리자 책임 하에 처분하고 그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 8조 (심는 기간) 가로수를 심는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

하여 심을 수 있다.

1. 봄철 : 3월상순 - 5월상순

2. 가을철 : 9월하순 - 11월하순

제 9조 (보호시설) ① 가로수는 심은 후 1년내지 2년간 별표 1-1 및 1-2에 의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풍해 또는 인축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재료는 복재, 철선, 플라스틱, 철판이프제품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식수대를 설치한다.

③ 교암령 탄보도부역 설치지역과 도심지 및 주요간선도로에는 별표 3-1 및 3-2에 의한 보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버스, 택시타는 곳 주변, 주요 시설물 주변에는 별표 4에 의한 보호대를 설치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방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여름철 가뭄의 피해에 대비하여 별표 5-1 및 5-2에 의한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0조 (가지치기 및 정비)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정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가지치기의 시기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실시하되, 교통신호등 및 안내판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와 사고 피해복에

대하여는 연중 시행할 수 있다.

2. 고암전선에 저촉되는 가로수는 닿는 부분만 자르지 말고 전체 수형을 다듬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제일 긴 가지 밑의 옆 가지는 지상에서 3-4미터 높이 까지 응이가 없도록 제거한다.

4. 통신시설에 장애를 주는 가지는 제거한다.

5. 교통신호등 및 각종 안내판의 앞을 가리는 가지는 제거한다.

6. 말라죽거나 바람에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가로수는 제거하고 파손된 지지대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제 11조 (병해충 방제)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거나 해를 입은 가지와 잎은 제거 또는 물로 깨끗이 뺏어주며 피해가

<p>심한 가지와 같은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p> <p>3. 알덩이 또는 애벌레, 번데기는 약제 살포 또는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p> <p>제 12 조(거름 주기) 관리책임자는 가로수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거름주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은 후 3년까지는 해마다 실시하고 그 이후는 2년마다 실시 2. 거름의 종류는 유기질비료(말린 계분, 부엽토, 퇴비등)와 화학비료를 사용 <p>제 13 조(시민관리제 실시) 관리책임자는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공장상가, 주민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기르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뭄시 물주기 2. 병해증 발생 또는 사고에 의한 피해복 발생시나 제 14 조에 위반한 행위의 예방 3.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4. 비상 재해시 전제, 제거, 지주복 설치등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등 	<p>제 14 조(금지행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 시킨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을 훈작물의 자주로 이용하는 행위 3. 식수대 또는 보호시설위에 물건을 놓거나 배우는 행위 4.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벌목 고사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p>제 15 조(원상복구) ① 관리책임자는 제 14 조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로부터 금 즉시 원상복구도록 하거나 제 19 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책임자는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의식 또는 철거등이 필요하지 될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공사시공전에 사전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제 16 조(비상재해시의 조치) 관리책임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차선히 전지하거나 차지해 보강등의
---	---

<p>조치</p> <p>2. 기울거나 넘어진 가로수는 즉시 바로세워야이며 활착 가능성 이 없거나 많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철거</p> <p>3. 인명, 재산, 교통등에 피해 또는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적절한 조치</p> <p>제 17조(존치가로수) 도로의 확장 또는 기타 원인으로 도로상에 위치한 수목으로서 기념 또는 풍치상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은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한 제 3조 내지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수로 존치할 수 있다.</p> <p>제 18조(대장비치 및 보고) ① 관리책임자는 해마다 11월 중에 정기적으로 가로수를 점검하여 생육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책임자는 노선별 관리대장을 별표 6-1 및 6-2 양식에 의거 작성비치하고 생육 및 변동상황을 기록정비하여야 하며 관리상황을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연 1회이상 관리대장 정비사항을 점검한다.</p> <p>제 19조(배상금 징수) ① 관리책임자는 제 14조 각호의 행위자가 제 15조에 의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자로 하여금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배상금을 받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로써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경우</p> <p>2.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로써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거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p> <p>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p> <p>③ 배상금은 잡수입으로 납입시킨다.</p> <p>제 20조(준용규정) 제 8조, 제 10조내지 제 19조의 규정은 가로수 이외의 수목(독지대, 수립대, 수벽 등)에도 준용한다.</p>	<p>보 1984.8.6</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제 1033 호 시

四百一

가로수관

卷之六

로설명

(좌우 측)

○ 연장

○ 도로목

卷五

○ 구간 □ 시종 점점

1. 좌, 우측은 시점에서 충돌방향으로 결정하고 해당란에 표기

卷之六 - 2

개
원
과
리
카
-
11

1. 관리번호 부여 방법

1

2

(로선별)

(좌우측)

(일련번호)

[로선별 - 구청별 일련번호
좌우측 - 좌측 1, 우측 2]

좌우측 - 좌측 1, 우측 2

2064

41-1

1984.8.6

“별표 7” 배상금 정수액 산정방법

1. 벌체, 수간절단,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 부적기 이식의 경우 배상액 = 수복비 + 작업비 + 지대비 + 잡비 + 기타경비 등

* 수복비는 정부고시가격 적용 (정부고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시중시가 적용)

* 기타 경비등에는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를 포함 한다.

2. 적기 이식의 경우

배상액 = 실작업비 + 운반비

* 적기 [3. 1 ~ 5.10
9.21 ~ 11.30]

3.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배상액 = 수목대의 20% + 실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분의 1/3 이상 가지치기를 말함.

4. 약도 가지치기의 경우

배상액 = 실작업비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072 호**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장 인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다만, 재직중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자는 50세까지로 한다”를 “다만, 재직중인 공무원은 53세까지, 기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자는 5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관리사업조정위원회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073 호**서울특별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

41-12 제 1033호 시

보 1984.8.6

정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에 “각구 전설국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삽입한다. 제 2조 중 위원회 다음에 “및 소위원회”를 삽입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구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전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에 준하여 각구의 실정에 맞도록 구성한다. 제 8조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간사는 전설관리국 도로과장으로 서기는 도로파 도로시설계장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간사는 전설국 토목과장으로 서기는 토목파 토목계장으로 한다.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원 명 단

근무부서명	직위
1. 국방부	시설국장
2.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3.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앙건설사무소장
4. 한국전기통신공사	남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제 1033 호 사

보 1984.8.6 41-13

근무부서명	직위
5.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전신전화전설국장
6. 한국전력공사	배전부장
7.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무소장
8.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장
9. 서울특별시	상하수국장
10.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11. 서울지하철공사	시설이사
12.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차장
13. 한국가스공사	기술이사
14. 서울특별시경찰국	교통과장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조사 및 시
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1984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074 호

서울특별시건설공사조사및시험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중 “종합기술시험 연구소”
를 “건설자재시험소”로 하고 “연
구소”를 “시험소”로 하여 “연구
소장”을 “시험소장”으로 한다.
제 1조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이하
“시”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시험의 종류) 건설공사에
—고 평면도 및 중요

41-14 제 1033호 시

보 1984.8.6

1. 선정시험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에
앞서 실시하는 토질조사 시험과
재료(기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위하여 실시
하는 시험

2.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
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을 검사
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

3. 검사시험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부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제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 (관리시험의 실시) 1. 시 소

관 전설공사에 대하여는 관리시험
을 별표의 관리시험의 기준에 따
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단, 구조재료(시멘트, 철근 및
기타의 강제등)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
화가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업규격

2. 韓國語文之發達：

卷之三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현장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특수한 자재인 경우는 시
행기판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
에 따를 수 있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판례시험의 담당) 1. 시 소

관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시험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소장은 시 소관공사 현장에서 실시되는 현장관리시험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험소장은 공사의 규모 및 성
질상 현장관리시험의 실시가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관리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7 조 내지 제 29 조 및 제 31 조
중 “연구소장등”을 “시험소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중앙전집부 그

남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제 1 호서식)

기 판 명

분류기호 :

19

수 신 : 건설자재시험소장
제 목 : 공사개요 통지

다음과 같이 공사개요를 통보하오니 검사시험 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2. 공 사 비		3. 공 사 기 간		
4. 공 사 위 치				
5. 시 공 자				
6. 현 장 시 험 실	설 치	현 장 시 험 가능 종 목		
설 치	미 설 치			
7. 공 사 개 요				
품 종	규 격	수 량	성 과 기 준	비 고

첨 부 : 1. 설계내역서 (시방서, 일위대가표) 및 도면 (정면도 및 중요 구조도) 1부.

41-16 제 1033 호 시

보 1984.8.6

(제 2 호서식)

건 설 자 재 시 험 소

전시 404-

19

수 신 :

참 조 :

제 목 : 검사시험 선정통지

1. 공사명 :

2. 위 공사에 대하여 당시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칙 제 14 조에 의하여 검사시험 대상종목을 선정 통보하오니 검사시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험 종 목	규 격	수 량	검 사 시 험 수 량	비 고

첨 부 : 시험요령서 1부. 끝.

건 설 자 재 시 험 소 장

제 1033 호 시

보 1984.8.6 41-17

(제 3호서식)

시험의뢰신청서

수신 :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장

제	심사	제장	소장

다음과 같이 시험의뢰 합니다.

시험종목			
시료명			
시료채취	공사구간		
위치	소재지	시	구
시료채취량		시료채취자 (현장감독)	소속 성명
시료채취일	198 . . .	시료채취 입회자	성명
공사명		시료운송 수단	철도, 자동차, 인편, 기타
시공청 및 대표자명			
생산자 및 상호명			
시험성과 이용목적	남품자재검수용, 관리시험		

2068

41-18 제 1033 호 시

보 1984.8.6

(수수료 내역)				19 . . .
시 험 항 목	전 당 수 수료	수 량 (건)	금 액	(의뢰자)
				주 소 :
				기관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합계 금액 : 원)				전화 번호 :
시 험 수 수료	합계 금액	원을 수입증지로 정하		
납 부 영 수 란	영수함.			
시 료 운 반	위 시료는 채취자에 의하여 (현장공장) 채취한 시료로 이를 에게 운반토록 위임하였습니다.			
위 임 사 항	채취자 ①			
○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19

(제 7호서식)

토 질 조 사 대 장

지 역 별 : _____

작 성 년 월 일	작성자	제 장	소 장

지 장 번 호 : _____

1. 현 황

위 치	조 사 개 요		
공 사 명			
소 관			
교 량 명			
로 선 명	조 사 시 행 청		
공사 기 간	및 도 금 자		
근 거 자 료	자료 보 관처	전 설 자 재 서 험 소	

2. 위치 평면도

2069

41-20 제 1033 호

보 1984.8.6

(제 8호서식)

조 사 연 구 시 험 의 회 서

(문서번호)

(전화번호)

(발송년월일)

수 신 : 건설자재시험소장

다음과 같이 시정(조사, 연구)를 의회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조사(연구) 품목 :

2. 목 적 :

3. 시험조사(연구) 내용 :

4. 시험조사(연구) 수행기간 : 198 . 부터

198 . 까지

5. 사업현황 및 장래계획개요 :

6. 기타 참고사항 :

7. 첨부서류 내용 :

신청인 주소

기관(상호)명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

(제 9호서식)

수탁조사(연구)시험계약서

건설자재시험소장을 갑으로 하고 을 블로 하여 건설공사 시험 규정 제 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시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같은 다음의 조사시험을 의뢰 수탁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제 목:

나. 목 적:

다. 내 용:

라. 수행기간:

제 2조 수탁조사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갑이 작성한 본 설계서에 의거 원으로 하여 을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 은 제 2조의 조사(연구)시험비 외에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뢰 시험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자재와 설비 및 소모품 기타조사(연구)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이를 실시한다.

제 4조 은 갑의 승인을 얻어 조사(연구)시험보조자를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

제 5조 갑과 은 수탁조사시험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6조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핵심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 을이 합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7조 은 수탁공사(연구)시험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8조 이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한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상방 서명날인하여 갑, 을 각 1동씩 보관한다.

갑: 건설자재시험소장

을:

2070

41-22 제 1033 호 시

보 1984.8.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
정에 관한 규칙중 제정 규칙을 이

1984.8.18.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별지)

징계 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구 分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면	해 임	정 치	감 봉	전 채	
2. 법무행정	1. 패소원인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불응				감봉 이상		격책 이상
	2. 소송 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 기일등) 도파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1) 주요사건 (2) 기타사건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감봉 이상		전책 이상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이상)				감봉 이상		전책 이상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23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0 호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일부변경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6 호 ('84. 6. 11)로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한 아현 1 구역내 5, 12, 16 구획과 만리구역내 3, 5 구획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제 42 조와 제 6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일부변경 인가고시 한다.
2. 동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동 인가에 대한 고시로 갈음하고 관계도서는 관할구청(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명 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나. 위 치: 아현 1 구역(마포구 아현동 50, 62, 85 번지 일대) 만리구역(중구 만리동 200 번지 일대)
다. 면적: 계 2,834 평 방미터
 아현 1 구역 2,105 " " "
 만리구역 729 " " "
라. 변경인가내역: 생략(개별 통보)

문 참조)

마.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1984. 8. 1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추 가)

1. 서울시 고시 제 232 호 (78.5.24) 및 제 207 호 (73.12)로 시설결제 및 승인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 행령 제 26 조, 2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서울시 고시 제 440 호 (84.7.30)로 도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동일구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인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파에 비치하고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함.

1984. 8. 14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11 동 156-2 ~ 신림 3 동 725-37 일

2071

41-24 제 1033 호 시

보 1984. 4. 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신림 11동 미성국교-대방변전소간 도로포장 공사)	○ 착공: '84.8.15. ○ 준공: '84.12.31.
다. 사업의 규모: B=8m L=1,038m ○ 아스콘포장(t=400CM) A=83a ○ 하수도(D=300-600mm) L=560m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라.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장(판약구청장)	사.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아.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계제생략)

건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이 용사항	소유자주소성 경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비 고
						관제인주소성 명		
1 724-4	신림동 724-4	주택 및 점포	연화조 평옥개	99.58 중 2	점포	신림동 724-4 정재조		74.11.23. 신축
2 725-12	신림동 725-12	점포	세멘부리조 평옥개	33.12 중 3	일부주택 일부점포	" 725-12 김창호		73.11.24. 신축
3 725-18	신림동 725-18	"	세멘벽돌조 평옥개	9.39 중 8	점포	" 산115 조경률		80.7.18 대수선 구조변경
제 3 동				13				

서울특별시고시제 482 호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도시재개발사업 남대문구역 제 3 지구, 서린구역 제 3 지구, 제 17 지구 을지로 2 가구역 제 6 지구, 마포로 제 1 구역 제 2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

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조,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및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제 1033 호 시

보 1984.8.6 41-25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8.13.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람 개 요

가. 재개발사업 변경 결정조서
(별첨 조서 작성)

나. 판례도면: 별첨(생략)

재 개 발 사 업 계획변경 결정조서

1. 남대문구역제 8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가. 지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8 지 구	중구남창동 6 번지	2,453 m ²	
변 경	"	"	2,438.6 m ²	

나. 건축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지 구 명	대지면적	전 폐 율	용적율	총 수	주 용 도	배 열	비 고
기 정	8 지 구	2,453 m ²	50%이하	600%이하	10층	판매시설	별첨	
변 경	"	2,438.6 m ²	46.25%	476.36%	10/5	업무시설	"	

2. 서린구역 제 3지구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가. 건축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分	지 구 명	대지면적	전 폐 율	용적율	총 수	주 용 도	배 열	비 고
기 정	3 지 구	985 m ²	40 %	600 %	10/2	업무시설	별첨	
변 경	"	923 m ²	41.97%	420.14%	10/4	"	"	

3. 서린구역제 17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가. 건축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 分	지 구 명	대지면적	전 폐율	용적율	총 수	주 용 도	배 열	비 고
기 정	17 지 구	2,334 m ²	40 %	589 %	15/3	업무시설	별첨	
변 경	"	2,324 m ²	"	514 %	16/4	"	"	

41-26 제1033호 시

보 1984.8.5

4. 울지로 제2가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 계획변경 결정
가. 건축계획변경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대지면적	전 폐율	용적율	총 수	주용도	배 열	비 고
기 정	6지구	1,331 m^2	32 %	340 %	40	업무시설	별첨	
변 경	"	1,389 m^2	42.57 %	669.3 %	19 / 5	"	"	지하 1층 판매시설

5. 마포로제 1구역 제2지구

가. 지구계획변경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2지구	마포구 마포동 34-1번지 일대	1,700 m^2	
변 경	"	"	1,761.8 m^2	

나. 건축계획변경 결정조서

구 분	지구명	대지면적	전 폐율	용적율	총 수	주용도	배 열	비 고
기 정	2지구	1,700 m^2	38 %	450 %	10 / 2	업무시설	별첨	
변 경	"	1,761.8 m^2	40.06 %	598.13 %	15 / 4	"	"	지하 1층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3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 고시

- 전설부고시 제 343호 (78.11.11)
로 사업계획 결정된 북가좌제 1
구역에 대하여
- 도시재개발법 제 5조, 제 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6조와 제 58조규정에 의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1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내 역

구 역 명	위 치	사업면적	비 고
북가좌제 1구역	서대문구 북가좌 1동 145번지 일대	34,486 m^2	

나. 변경결정조서 : 별첨 (생략)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27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425호(84.7.25)
로 도시계획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면은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 도로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폭 (m)	길이 (m)	가 접	종 접	비 고
신 설	소로	3	6	40	중구신당동 292-92	신당동 298-1 일대	
"	"	3	6	45	" 340-24	" 343-2 일대	

별첨 :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485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 결정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79호(83.7.22)
및 동고시 제425호(84.7.25)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학 교	은평구대조동 산7-2 일대	9,296 ㎡	(증) 727 ㎡	10,023 ㎡	일부해제 162 ㎡ 면적정정 389 ㎡

41-28 제 1033호 시

보 1984.8.6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형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700m	구파발 111-2	구파발 28-2	
변경		3	6m	700m	"	"	일부위치변경

◎ 서울특별시고시제 48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 349호(84.6.15)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은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배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지적승인조서(제 1안)의 가항, 이기사항)

나. 지적승인도면: 별첨(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87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설계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479호(83.9.15)로 사업시행 허가된(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설계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가. 사업시행지: 강서구신정동 737-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설계변경허가

다. 사업의 규모: 대지 8,698.㎡

건물연면적 3,488.40㎡

설계변경(별첨내역표성략)

라. 사업시행기간: 83.9.15 - 84.9.14

마.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목동 404-3

상마운수주식회사

바. 계획면도: 별첨(도면생략)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29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83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7호(73.12)로 시설결정 및 동시지적승인된 신림 9동 818-255-5 간 일부도로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 8. 9.

서울특별시장

공 람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관악구신림9동
818~253-41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신림9동818 주변하수도공사) 시행
다. 사업의 규모 :

콘크리트포장 A = 1.58a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
시행일로부터 35일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
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전이명세(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
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기 바람

◎서울특별시공고제 484호

관인재교부 및 폐기공고

종로구청장의 직인 및 종로구청
임을 관인규정제 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
기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6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4. 8.

서울특별시장

2074

11-30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1. 사용 및 폐기일자 : 1984. 8. 25 2. 사용직인 : 종로구청장직인 및 종로구청 계인 3. 폐기직인 : 종로구청장직인 및 종로구청 계인 공인의 인영		폐기인  공인명 종로구청장직인 및 계인																																												
인 영																																														
 		◎서울특별시 공고제 485 호 1983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공고 <p>1983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144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4. 8. 14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 회계별</th><th>예 산 현 액</th><th>세 입 액</th><th>세 출 액</th><th>사 고 이 월 액</th></tr> </thead> <tbody> <tr> <td>일반회계</td><td>840,084,354,000</td><td>873,188,319,055.44</td><td>706,963,203,096</td><td>43,898,001,232</td></tr> <tr> <td>국민주택비특별회계</td><td>83,443,000,000</td><td>57,023,114,731.28</td><td>51,178,333,557</td><td>11,034,033,100</td></tr> <tr> <td>주택재개발비 "</td><td>21,053,000,000</td><td>19,166,335,067</td><td>6,963,352,355</td><td>6,667,007,596</td></tr> <tr> <td>토정구획정리비 "</td><td>116,503,000,000</td><td>110,638,145,016.67</td><td>68,162,449,556</td><td>23,558,353,401</td></tr> <tr> <td>하수처리장비 "</td><td>31,212,000,000</td><td>28,601,172,785</td><td>15,876,315,893</td><td>9,753,080,818</td></tr> <tr> <td>유료도로비 "</td><td>8,615,000,000</td><td>9,191,059,540</td><td>8,038,693,458</td><td>5,800,000</td></tr> <tr> <td>주차장시설비 "</td><td>4,289,000,000</td><td>3,875,243,643</td><td>2,113,902,653</td><td>1,122,562,835</td></tr> <tr> <td>의료보호기금 "</td><td>7,297,914,000</td><td>7,560,727,449</td><td>7,224,047,780</td><td>0</td></tr> </tbody> </table>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액	세 출 액	사 고 이 월 액	일반회계	840,084,354,000	873,188,319,055.44	706,963,203,096	43,898,001,232	국민주택비특별회계	83,443,000,000	57,023,114,731.28	51,178,333,557	11,034,033,100	주택재개발비 "	21,053,000,000	19,166,335,067	6,963,352,355	6,667,007,596	토정구획정리비 "	116,503,000,000	110,638,145,016.67	68,162,449,556	23,558,353,401	하수처리장비 "	31,212,000,000	28,601,172,785	15,876,315,893	9,753,080,818	유료도로비 "	8,615,000,000	9,191,059,540	8,038,693,458	5,800,000	주차장시설비 "	4,289,000,000	3,875,243,643	2,113,902,653	1,122,562,835	의료보호기금 "	7,297,914,000	7,560,727,449	7,224,047,780	0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액	세 출 액	사 고 이 월 액																																										
일반회계	840,084,354,000	873,188,319,055.44	706,963,203,096	43,898,001,232																																										
국민주택비특별회계	83,443,000,000	57,023,114,731.28	51,178,333,557	11,034,033,100																																										
주택재개발비 "	21,053,000,000	19,166,335,067	6,963,352,355	6,667,007,596																																										
토정구획정리비 "	116,503,000,000	110,638,145,016.67	68,162,449,556	23,558,353,401																																										
하수처리장비 "	31,212,000,000	28,601,172,785	15,876,315,893	9,753,080,818																																										
유료도로비 "	8,615,000,000	9,191,059,540	8,038,693,458	5,800,000																																										
주차장시설비 "	4,289,000,000	3,875,243,643	2,113,902,653	1,122,562,835																																										
의료보호기금 "	7,297,914,000	7,560,727,449	7,224,047,780	0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31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세 입 액	세 출 액	사 고 이 월 액
특정건축물정비비(특별회계)	3,628,000,000	9,838,932,254	95,532,292	309,595,765
올림픽사업비	78,881,000,000	34,501,257,534	17,813,011,207	26,933,362,000
목. 신정개발비	100,000,000,000	65,000,000,000	63,714,550,071	751,476,826
공과금통합징수비	445,445,000	390,455,000	315,607,923	0
수도사업비	152,618,000,000	155,100,350,693	124,613,263,478	3,702,668,000
지하철운수사업비	340,948,000,000	266,970,339,292	240,973,638,671	16,391,205,433
병원사업비	6,248,000,000	5,690,086,679	4,341,758,455	0
도시재개발사업기금	103,662,000,000	95,642,053,607	61,327,980,847	19,289,486,556
재해구호	2,868,000,000	2,378,377,477	0	0

◎서울특별시공고제 486 호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취소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전문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음업체는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8호 및 국세징수법 제7

1984. 8. 4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취소일자	사유	근거법규
토공(서울 82-02-235), 미장방수(서울 82-03-78), 도장(서울 82-05-117)	우리건업(주)	황기연 백한기	성동구 행당동 319-36	84.8.16	국세체납	건설업법 38-1-18호 및 국세징수법 제7조

41-32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 서울특별시공고제 488 호

공산품 품질검사 불합격 상품공고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의 규정

에 의거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상품을 동법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불합격상품 및 제조업체명

순번	등록번호	소재지	상호	대표자	상품명	검사결과	조치 내용
1	7- 44	도봉구 중계동 549-11	쌍용전재	김종훈	시멘트브릭	불합격	판(시) 보게재 판매 및 진열금지 수거파기
2	7- 86	하계동 336-17	삼부콘크리트산업	정기부	"	"	"
3	7- 89	하계동 340-5	태능기업	전봉준	시멘트벽돌	"	"
4	7-111	수유동 484-4	삼표기와	한석태	시멘트기와	"	"
5	7-249	월계동 876-3	서울공업사	진한술	"	"	"
6	2059	공릉동 520	대성산업사	길방한	"	"	"
7	11- 85	강서구 방화동 570-2	평동전재	안동섭	시멘트벽돌	"	"
8	15- 26	관악구 봉천동 870-11	제일기업	이상우	시멘트기와	"	"
9	17- 37	강동구 이동 378	창성기업	김달여	시멘트부리	"	"
10	17- 45	길동 371-1	태성전재	구준희	시멘트벽돌	"	"
11	17- 46	마천동 40	이화기업	우제호	시멘트브릭	"	"
12	17- 62	삼천동 38	신진기업	홍맹엽	"	"	"

◎ 서울특별시공고제 489 호

KS 표시정지처분 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업체명 : (주) 환금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72-1

대표자 : 윤일중

허가번호 : 제 2221 호

규격번호 : KSB 6401

품명 : 난방용 주철 방열기

종류등급 : 벽걸이 세로형 (W-V)

처분사유 : KS 규격 미달

처분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서울특별시공고제 490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 공람

1. 하수도법 제 13조에 의거 도봉구 청에서 공공하수도 공사허가한 공공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었기 하수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33

도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고 및 공람 한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4. 8. 16 서울특별시장

공고 및 공람 개요

연 번	위 치	시설개요	사용개시 년월일	매수액	구 별	비고
1	방문동 486-102 외 4 필지	D= 450 % L= 142 m D= 600 L= 262	84. 8	중량	합류식	
2	미아동 837-871 외 4 필지	D= 450 L= 50		청량		
3	상계동 77-515 외 13 필지	D= 450 L= 104		중량		
4	월계동 890-1 외 4 필지	D= 600 L= 73				
5	상계동 456 외 27 필지	D= 600 L= 1480 D= 900 L= 124				
6	상계동 181 외 2 외 11필지	D= 300 L= 613 D= 450 L= 720 D= 600 L= 450				
7	월계동 480-3 외 9 필지	D= 300 L= 450 D= 450 L= 1030 D= 600 L= 737 D= 1200 L= 194				
8	미아동산 35-19	D= 600 L= 600 D= 700 L= 100 D= 1100 L= 50		청계		
9	상계동 406-5 외 6 필지	D= 450 L= 25		중량		
10	창동 521-16	D= 450 L= 18				
11	창동 263-1 외 7 필지	D= 450 L= 203				
12	방학동 399-4	D= 450 L= 90 암거 1.5×1.5 m = 67				
13	하계동 169-4 외 1 필지	D= 600 L= 33				

41-34 제 1033호 시

보 1984.8.6

연번	위 치	시 설 개 요	사 풍 개 시 년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비 고
14	쌍문동 520-53 외 4 필지	D=450 L=61	84.8	중 랑	합 류 식	
15	방학동 396-28	D=450 L=32	"	"	"	
16	방학동 396-4 외 4 필지	D=450 L=217 D=800 L=70	" "	" "	" "	
17	상계동 산 93	D=450 L=23 D=600 L=294	" "	" "	" "	
18	우이동 170 외 3 필지	D=450 L=72	"	"	"	
19	창동 산 205-11	D=600 L=75	"	"	"	
20	월계 동 532	D=600 L=30	"	"	"	
21	상계동 136-1 외 2 필지	D=450 L=53	"	"	"	
22	수유동 321-1 외 2 필지	D=450 L=88 D=600 L=486	" "	" "	" "	
23	쌍문동 446-2 외 1 필지	D=600 L=20	"	"	"	
24	창동 254-3 외 3 필지	D=600 L=80	"	"	"	
25	상계동 438 외 2 필지	D=450 L=111	"	"	"	
26	창동 261 외 3 필지	D=450 L=86 D=600 L=112	" "	" "	" "	
27	상계동 185 외 1 필지	D=450 L=17 D=600 L=143	" "	" "	" "	
28	방학동 304-9	D=450 L=28 D=600 L=44 D=800 L=22	" " "	" " "	" " "	
29	수유동 281 외 1 필지	D=450 L=59 D=600 L=147	" "	" "	" "	
30	하계동 153-3	D=450 L=219 D=600 L=210	" "	" "	" "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35

◎ 서울특별시공고제 491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 및
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조에 의거 도봉구
청 인가 토목 410-4135(84.3.3)
호 및 토목 410-9048(84.5.9) 호
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한 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기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년간 일반인
에게 공고 및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도
별도 통지를 생각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84. 8.

서울특별시장

공고 및 공람기록

연번	위치	시설개요	사용개시년월일	마수액	구분
1	상운동 137 번지와 1 개소 하수도 포장	D = 450 ^m D = 600	L = 120 ^m L = 20	84.8	중장 합류구
2	상운동 714-23-708-5 와 1 개소 하수도 포장	D = 450 D = 600 D = 800	L = 30 L = 230 L = 80	" " "	"
3	방학동 644-644-25 간 하수도 포장	D = 600	L = 170	" " "	"
4	방학동 633-633-27와 1 개소	D = 600	L = 230	" " "	"
5	방학동 608-23-608-35 하수도 포장	D = 600	L = 90	" " "	"
6	상계 2 동 169-389 간 하수도 포장	D = 450	L = 102.5	" " "	"
7	수유 1 동 57-12 하수도 포장	D = 450	L = 45	" " "	"
8	방학 2 동 615-10-615 -15 하수도 포장	D = 600	L = 35	" " "	"
9	창동 393-1 하수도 포장	D = 600	L = 300	" " "	"

2077

41-36 제 1033 호 시

보 1984.8.6

연번	위치	시설개요	사용개시년월일	배수구역	구별
10	방학 1동 691-695 번지의 2개소하수도포장	D = 600 L = 202.5	84.8	중랑	합류식
11	공릉동 398-597 간 하수도 포장	D = 600 L = 910 암거 (3 × 0.3) L = 60	" "	" "	"
12	계상국교진입로 개설공사	D = 450 L = 215	" "	" "	"
13	미아 4동 97, 95 주변의 1개소하수도포장	D = 450 L = 282.5 암거 (1.5 × 1.5) L = 30	" "	청계	"

◎서울특별시공고제 494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세 풍운수정류장)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기
바란다.

1984.8.17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12호(83.11.
1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66호(84.2.6)로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도시계획을 수
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
거 공람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하고

-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온수동 57-1,
58, 60.
- 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여
객자동차정류장, 세 풍운수정류장)
- 다.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6,615㎡
 - 2) 건물계획 - 건축면적 802㎡
건축연면적 2,751.36㎡
-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구로구 오류동
90-10. 세 풍운수(주) 조창원

제 1033 호 시

부 1984.8.6 41-37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
소, 성명 - 구로구청도시정비과 비치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
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
권이 의의 권리명세 - 구로구청도시정
비과 비치
- 사. 공람장소 - 구로구청도시정비과
- 아. 공람기간 - 84.8.20 ~ 84.9.3

◎서울특별시공고제 495호

건설업(전문공사업)면허취소공고

건설업법 제 38조 제 1항 제 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업체의 건
설업(전문공사업)면허를 취소하였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4.8.16.

서울특별시장

다 음

업종및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현 소유	취소일자	근거법규
토공(서울 82- 02-260), 설비 (서울 82-12- 235)	현지건설(주)	송인현	강남구논현 동 125-2	2개층이상 의 전문공 사가 복합 된 공사 도급시공	84.8.18	건설업법 제 38-1- 15

◎서울특별시공고제 49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7호 (74.4.
2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307-
40호의 4필지 및 중화동 179-
11호의 14필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도로)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
계획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2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를 공람한다.

2.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
하여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공고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
기 바란다.

1984.8.21.

서울특별시장

41-38제 1033호 시

보

1984.8.6

- 공 람 요 치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상
봉동 307-40호외 4필지 및 중화
동 179-11호외 14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상봉국교 진
입로 포장공사
3. 사업규모 : 폭 6m 길이 15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로부터 19일이내 1984.12.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8.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9. 공람시간 : 1984.8.22~1984.9.
4. (14일간)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
문구청 토목과에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관계인 주소 성명		
1	중화동 179-	전	79㎡	79㎡	도로	동대문구상봉동 311	합집보		
2	179-21	대	86㎡	86㎡	도로	"	"		
3	179-22	대	51㎡	51㎡	대지	인천시북구부평동 684	회영관	179-7에 에서분할	
4	179-23	전	11㎡	11㎡	도로	동대문구상봉동 311	합집보	179-4에 에서분할	
5	179-24	대	34㎡	34㎡	대지	동대문구중화동 91-2	유기섭	179-3에 에서분할	
6	180-21	대	2㎡	2㎡	도로	중구장충동 2가 42-2	김순이	180-11 에서분할	
7	180-22	대	16㎡	16㎡	도로	중화동 180-12 중구충정로 1가 75번 지 제 66509	이용부 농협 중앙회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일천오백만 원	180-12 에서분할
8	180-23	대	66㎡	66㎡	대지	중구장충동 2가 42-2	김순이		180-13 에서분할
9	180-24	대	1㎡	1㎡	대지	도봉구수유동 472-229	김우식		180-17 에서분할

제 1033 호

시

보

1984.8.6. 41-3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 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관계인 주소 성명			
10	중화동 181-1	도	188㎡	188㎡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29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181에서 분할
11	• 182-2	파수	13㎡	13㎡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13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상봉동313 에서분할
12	• 183-2	대	262㎡	262㎡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29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상봉동313 • 183 에서분할
13	180-20	대	2㎡	2㎡	대지	동대문구 중화동 180-9	김유태		180-9 에서분할
14	307-40	대	8㎡	8㎡	대지	• 상봉동 307-24	최봉환		307-24 에서분할
15	309-21	대	45㎡	45㎡	대지	• • 309-17	김옥분		309-17 에서분할
16	372	파수	31㎡	31㎡	도로	동대문구 상봉동 313	임석호 김시진 임사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관계인 주소 성명		
1	중화동 179-3	주택	연와조평옥개	5戸	주택	중화동 91-2		유기석
2	중화동 179-7	주택	연와조평옥개	30戸	주택	인천시부평동 604		최영관
3	상봉동 307-24	주택	연와조평옥개	1戸	주택	상봉동 307-24		최봉환
4	상봉동 309-17	주택	연와조평옥개	3戸	주택	• 309-17		김옥분

2679

11-40 제 1033 호 시

보 1984.8.6

◎서울특별시공고제 498 호

구로지구환경계획일부변경및환경예정지
변경지정공고

1. 건설부 공고 제 37 호 ('79.3.
29)로 사업시행 인가된 구로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경예정지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제 55조 및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계획 일부변경 및 환
경예정지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4.8.18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계획 변경내용

- 가. 사업명 :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 신
길동 각 일부
다. 기타 : 판계 도서는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판
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판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
나 미수령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판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판계 도서 생략)

구 청 공 고

◎강서구공고제 52 호

- 직인개각공고 -

서울특별시 패인규칙 제 3 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신정 2동장, 신정
4동장의 직인 및 계인을 개각사용
승인하였기 둘 규칙 제 6 조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한다.

1984.8.8

강 서 구 청 장

- 1) 사용일자 : 1984.8.20 09:00
2) 공인명 : 신정 2, 4동장의 직인
(민원사무전용) 및 계인
3) 공인의 인영.

공인의인영
(민원사무전용)

인		
영		
공 인 명	신정 2동장직인 및 계인	

제 1033 호 시

보 1984. 8. 6 41-41

인			사령
공인장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이 있었기 통보함. 발령 제 314 호		
신정 4동장직인 및 개인			감사관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최경환 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1984년 8월 16일자			발령 제 315 호
성명	발령사학	현부서	직급
신미범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84. 7. 10 일자 (발령호수 275 호) 신규발령을 동일자 로 취소함.	동부병원	지방약무사보시보
허영희	"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보시보
양정우	"	"	"
이순희	"	"	"
이경자	"	"	"
이원경	"	"	"
조영숙	"	"	"
김명숙	"	"	"
곽선희	"	"	"
서울특별시장			

2050